

[ ] 배출가스저감장치  
[ ] 저공해엔진

반납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소유자 성명	전화번호(팩스번호)	
	소유자 주소		
신청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	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	
	차대번호	장치 부착(개조) 연월일	
반납 사유	[ ]폐차 또는 폐기 [ ]수출 [ ]사고·재해·도난 [ ]천연가스버스 대차 [ ]저공해차 대차 [ ]기타 ( )		
반납 내용	장치 반납	[ ]매연여과장치(DPF, pDPF)	
		[ ]산화촉매장치(DOC)	
		[ ]저공해엔진 촉매	
[ ]현물 반납	[ ]금전 납부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5항·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사고,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